

2019학년도

## 제5차 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

---

1. 일 시 : 2019년 10월 7일(월) 10:00

2. 장 소 : 화도관 2층 대회의실

### 3. 대학평의위원회(11명)

■참석의원 : 송영출, 천성오, 김태석, 김재요, 김태훈,  
정효찬, 윤성혁 (7명)

■불참의원 : 이정훈, 김진곤, 이재현, 고민석 (4명)

### 4. 안 건

가. 고정자산 변동(안)

나. 규정 개정/제정/폐지(안)

- 1) 대학원 통합학칙 개정(안)
- 2) 상담복지정책대학원 학사운영 내규 개정(안)
- 3) 명예교수 규정 개정(안)
- 4) 교원 신규임용 내규 개정(안)
- 5) 교육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개정(안)
- 6) 외국인 특별 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개정(안)
- 7) 특별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개정(안)
- 8) 전임총장 예우 규정 제정(안)
- 9) 강사에 관한 규정 제정(안)
- 10) 강사 임용에 관한 내규 제정(안)
- 11) 교양교육 운영 규정 개정(안)
- 12) 특별전임교원의 특별연구학기에 관한 내규 제정(안)
- 13) 직무발명 규정 개정(안)
- 14) 장학 규정 개정(안)
- 15) 광운대학교 학교기업 설립 및 운영 규정 개정(안)
- 16) 광운대학교 창업윤리위원회 규정 제정(안)
- 17) 광운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규정 제정(안)
- 18)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 기금운용심의회 규정 제정(안)

### 5. 회의 내용 및 회의결과

위원장이 성원 확인 후(총원 11명 중 7명 참석) 개회를 선언하다.

**【고정자산 변동(안)】**

- 시설관재팀장이 주요내용을 설명하다.
- 의결내용 : 원안대로 가결하다.

**【규정 개정/제정/폐지】**

**1) 대학원 통합학칙 개정(안)**

- 제안부서에서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.
- 주요 내용
  - 일반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정원조정 등
- 의결내용 : 원안대로 가결하다.

**2) 상담복지정책대학원 학사운영 내규 개정(안)**

- 제안부서에서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.
- 주요 내용
  - 논문지도세미나 과정 설치, 논문지도비 신설
- 위원이 논문지도세미나 과정 설치, 논문지도비 지급과 관련하여 타 특수대학원의 규정에 대해 질의하였고 타 특수대학원의 규정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추후 모든 특수대학원의 단일화된 안건으로 처리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다.
- 의결내용 : 관련내용을 보완하여 차기 회의에서 재심의 하기로 하다.

**3) 명예교수 규정 개정(안)**

- 제안부서에서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.
- 주요 내용
  - 명예교수 자격 기준 정비, 강의담당시간 규정화 등
- 제2조(추대자격)에서 타대학 근무기간을 제외하기로 하다.
- 의결내용 : 상기와 같이 수정한 안을 가결하다.

**4) 교원 신규임용 내규 개정(안)**

- 제안부서에서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.
- 주요 내용
  - 교원 초빙 심사위원 선정방식을 전공분야의 전임교원 중 선정
- 의결내용 : 원안대로 가결하다.

**5) 교육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개정(안)**

- 제안부서에서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.

- 주요 내용
  - 교육전임교원에 대한 보직수행 시 업적 의무 감면에 필요사항 반영
- 의결내용 : 원안대로 가결하다.

#### 6) 외국인 특별 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개정(안)

- 제안부서에서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.
- 주요 내용
  - 외국인 특별 전임교원의 승진 직급 수정 등
- 의결내용 : 원안대로 가결하다.

#### 7) 특별 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개정(안)

- 제안부서에서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.
- 주요 내용
  - 특별연구학기제 시행 도입 등
- 의결내용 : 원안대로 가결하다.

#### 8) 전임총장 예우 규정 제정(안)

- 제안부서에서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.
- 주요 내용
  - 전임총장의 강의시간, 공간 배정, 처우사항 등
- 위원이 현시점에서 규정을 제정할 필요성이 충분하지 않으며 규정 제정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다.
- 의결내용 : 전임총장 예우 규정 제정을 부결하다.

#### 9) 강사에 관한 규정 제정(안)

- 제안부서에서 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.
- 주요 내용
  -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강사의 임용 및 처우를 규정
- 의결내용 : 원안대로 가결하다.

#### 10) 강사 임용에 관한 내규 제정(안)

- 제안부서에서 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.
- 주요 내용
  -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강사의 임용 및 재임용 등 규정
- 의결내용 : 원안대로 가결하다.

#### 11) 특별전임교원의 특별연구학기에 관한 내규 제정(안)

- 제안부서에서 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.
- 주요 내용
  - 특별전임교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특별연구학기 제도 신설
- 특별연구학기 시행의 기간, 자격 등과 관련하여 일반전임교원과 차이 발생하므로 타대학의 사례조사 후 세부적인 내용을 보완하여 재심의 하기로 하다.
- 의결내용 : 관련내용을 보완하여 차기 회의에서 재심의 하기로 하다.

#### 12) 교양교육 운영 규정 개정(안)

- 제안부서에서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.
- 주요 내용
  - 교양교과목군 분류표에 정보영역 추가
- 의결내용 : 원안대로 가결하다.

#### 13) 직무발명 규정 개정(안)

- 제안부서에서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.
- 주요 내용
  - 기술료 분배 비율 삭제
- 제22조(기술료 분배대상 및 비율)에서 기술료 분배비율은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를 통해 별도로 정하기로 하다.
- 의결내용 : 상기와 같이 수정한 안을 가결하다.

#### 14) 장학 규정 개정(안)

- 제안부서에서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.
- 주요 내용
  - 장학금 종류, 성격, 심사기준, 절차 명시 등
- 의결내용 : 원안대로 가결하다.

#### 15) 광운대학교 학교기업 설립 및 운영 규정 개정(안)

- 제안부서에서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.
- 주요 내용
  - 학교기업 설치 관련 법률, 주관부서, 용어 변경
- 의결내용 : 원안대로 가결하다.

#### 16) 광운대학교 창업운영위원회 규정 제정(안)

- 제안부서에서 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.
- 주요 내용

- 광운대학교 창업운영위원회 목적, 구성, 기능
- 의결내용 : 원안대로 가결하다.

**17) 광운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규정 제정(안)**

- 제안부서에서 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.
- 주요 내용
  - 광운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목적, 구성, 기능
- 제위원회 설치 규정에 근거하여 임기를 1년으로 수정하기로 하다.
- 의결내용 : 상기와 같이 수정한 안을 가결하다.

**18)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 기금운용심의회 규정 제정(안)**

- 제안부서에서 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.
- 주요 내용
  -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 기금운용심의회 목적, 구성, 기능
- 제위원회 설치 규정에 근거하여 임기를 1년으로 수정하고 위촉직 위원의 문구를 일부 수정하기로 하다.
- 의결내용 : 상기와 같이 수정한 안을 가결하다.

**6. 폐회**

안건에 대해 의장이 의원들의 추가 의견을 묻고 폐회를 선언하다.

2019년 10월 7일

이상의 회의 내용을 확인함.

의 장	송 영 출	(서명)
부 의 장	천 성 오	(서명)
평 의 원	김 태 석	(서명)
평 의 원	이 정 훈	(서명) 불참
평 의 원	김 재 요	(서명)
평 의 원	김 진 곤	(서명) 불참
평 의 원	김 태 훈	(서명)
평 의 원	정 효 찬	(서명)
평 의 원	윤 성 혁	(서명)
평 의 원	이 재 현	(서명) 불참
평 의 원	고 민 석	(서명) 불참